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1. 16 선고 2020가단573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19. 12. 3. 접수 제405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F는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62073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1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주식회사 F에게 10,019,146원과 그 중 2,762,33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급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0. 3. 31.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D의 어머니인 G은 2019. 1.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D, H, 피고가 있다.

다. D은 2019. 1. 2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19. 12. 3. 접수 제40570호로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포함한 부모님들을 부양한 반면 D은 부모님들을 부양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모님들의 재산을 매도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하여 D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

목록

1. 서산시 1 대 609㎡

2. 서산시 1 지상

벽돌구조 슬래브지붕 1층 단독주택 115.93㎡.끝.

